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63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최수진・임이자・신성범

한지아 • 유용원 • 박정하

구자근 · 김예지 · 성일종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그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의 균형 있는 지원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세제 측면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 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			
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	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				
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u>202</u>	<u>202</u>			
<u>6년 12월 31일</u> 까지 경감한다.	9년 12월 31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